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3

발의연월일: 2024. 6. 13.

발 의 자:한정애·이학영·송옥주

서영교 • 정성호 • 문진석

허종식・황 희・허 영

김주영 · 안도걸 · 임오경

정준호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유럽연합 국가 등은 입양의 경우에도 출산휴가에 상당하는 입양휴가 및 급여지원을 실시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입양 초 기에 양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출산휴가와 같은 수준의 입양휴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을 하는 경우에 120일의 입양휴가를 주도록 하고, 출산전후휴가와 같은 급여지원이이루어지도록 규정함으로써 입양 자녀의 원활한 양육이 이루어지도록하려는 것임(안 제75조, 제76조제1항제2호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421호)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 중 "출산전후휴가기간"을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3에 따른 입양휴가기간"으로 한다.

제73조의2제1항 중 "출산전후휴가기간"을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3에 따른 입양휴가기간"으로 한다.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을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3에 따른 입양휴가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또는 입양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입양휴가"로 한다.

제76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근로기준법」 제74조의3에 따른 입양휴가 기간.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60일을 한도로 한다)로 한정한다.

제76조의2제1항 중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을 "출산전후휴가기간, 유산·사산휴가기간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3에 따

른 입양휴가기간"으로,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출산 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입양휴가"로 한다.

제77조제1항 후단 중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산휴가"를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입양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를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입양휴가"로 한다.

제77조의5제3항 후단 중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출산, 유산·사산 또는 입양"으로 한다.

제77조의10제3항 후단 중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출산, 유산·사산 또는 입양"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 고용노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 ----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 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 같은 법 제74조의3에 따른 입 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 양휴가기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 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 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하다. _____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3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73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급여)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 립 지원에 관한 법률 _ 제19조 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30일(「근로 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

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실시한 피보험자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한다.

② ~ ④ (생 략)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고 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의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지급한다.

1. (생략)

우유가기간 또는 같은 법 세14
조의3에 따른 입양휴가기간
② ~ ④ (현행과 같음)
에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3
에 따른 입양휴가를
1. (현행과 같음)

- 2.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 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이내에 신청하여야한다.
-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 제75조 기 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1. (생 략) <신 설>

2			<u>출산전후</u>
<u>휴가,</u>	유산 •	사산휴기	가 또는
입양.	<u>휴가</u>		
· 			
 제76조(지	ココ ココ	. ニ) ①	
세 /0소(^	기百 기신	· 등) ①	
1. (현	행과 같음))	
<u>2.</u> 「금	'로기준'	법」 제74	<u> </u> 조의3에
<u> 따른</u>	입양휴기	가 기간.	<u>다만, 우</u>

<u>2.</u> (생 략)

②·③ (생 략)

제76조의2(기간제근로자 또는 파 견근로자에 대한 적용) ① 고 용노동부장관은 제76조제1항제 1호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 로자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 간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경 우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 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 산 · 사산휴가 종료일까지의 기 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기 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게 지급한다.

② (생략)

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에는 휴가 기간 중 60일을 초
과한 일수(60일을 한도로 한
다)로 한정한다.
<u>3.</u> (현행 제2호와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76조의2(기간제근로자 또는 파
견근로자에 대한 적용) ①
<u>출산전후휴가</u>
기간, 유산·사산휴가기간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3에 따른 입
<u>양휴가기간</u>
출산전후휴
<u>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입양</u>
<u>휴가</u>

② (현행과 같음)

② 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반환명령, 사실 확인, 지급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 및 제73조(제1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제7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직"은 각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로, "육아휴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1/1소(순봉) (1)
<u>"출산</u>
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입
양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
2
가, 유산·사산휴가, 입양휴가"
.

제77조의5(준용) ①・② (생 략)

③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반환명령, 지급 제한 등에 관하 여는 제62조 및 제73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급여등" 으로, 제73조제4항 중 "육아휴 직 급여"는 "출산전후급여등" 으로, "육아휴직"은 "출산 또는 유산·사산"으로, "육아휴직 급 여 요건"은 "출산전후급여등 지급 요건"으로 본다.

④ (생 략)

제77조의10(준용) ①·② (생략)

③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 등의 반환명령,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및 제73조제4 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급여등"으로, 제73조제4항 중 "육아휴직 급여"는 "출산전후급여 등"으로, "육아휴직"은 "출산 또는 유산·사산"으로, "육아휴

제77조의5(준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출산, 유산·사산 또는 입</u>
<u>%</u> :"
④ (현행과 같음)
제77조의10(준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u>
"출산, 유산·사산 또는
<u> </u>

직 급여 요건"은 "출산전후급	이 야."
여등 지급 요건"으로 본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